늘봄카페
(반포점, 방배점, 방배느티점)
사업단 운영규정

2022년

서초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

늘봄카페(반포점, 방배점, 방배느티점) 사업 운영규정

제정일: 2021.11.30.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사업의 명칭은『늘봄카페 반포점』,『늘봄카페 방배점』,『늘봄카페 방배느티점』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사업은 서초구립 방배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 서류 및 면접을 통해 선발된 바리스타 및 제과제빵자격을 소유한 참여자들에게 고급원두를 사용한 커피 제조, 제빵의 기회를 줌으로써 인생이모작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품 판매 및 홍보활동을 바탕으로 전문 직업인으로서 경제활동 참여와 함께, 지속적인 소득 창출과 참여자간의 활동교류를 통해 노인복지 차원으로 사회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사업은 참여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노인인식 개선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수행기관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사회보험관계법령을 준수

2.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인 업무로 한다.
   1) 식품 제조와 관련한 전문 직업인 양성 및 전문성 강화(소양 및 직무, 안전교육)
   2) 참여자의 지속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 정보 및 연계지원
   3) 자기개발 기회의 확대
   4)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 진행
   5) 사업 홍보 및 참여자(활동참여자, 이용고객) 관리
3. 본 사업은 전항의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그 조직을 이용하지 못한다.

제 3조 (영업장)

본 사업의 영업장(카페)은 총 3개소로 다음과 같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늘봄카페 반포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73 반포1동주민센터 2층 로비
2) 늘봄카페 방배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48 방배노인종합복지관 1층 로비
3) 늘봄카페 방배느티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87길 17-4 방배느티나무쉼터 1층 로비

제 2 장 구성 및 조직

제 4조 (구성)

본 사업은 실무자, 팀장(참여자대표), 활동참여자, 전문인력,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 및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5조 (팀장 선출 및 임기, 직무)

팀장은 사업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자 중 정기모임에서 참여자 다수에 의해 선발하며, 임기는 일반참여자와 같다. 팀장의 직무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대표하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실무자를 도와 사업 제반업무를 지원한다.

제 6조 (참여자 자격기준)

1.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분 (남, 여 구분 없음)
2. 유사사업 경험자 우선 선발
3. 바리스타 및 제과제빵 자격증 우대

제 7조 (선발제외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2.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이상 참여자
3.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4. 기타 (금치산자 및 범죄자 외)

제 8조 (참여자 권리)

1. 본 사업에서 제공하는 취업활동에 따른 관리 및 지원을 받는다.
2. 1인 1표로 운영되며 참여자 간 의사결정 과정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한다.
3. 모든 참여자의 활동 시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받을 권리와 자유권이 있다.
4. 참여자와 이용자 간에 크고 작은 불만사항이나 다툼이 발생하였을 시, 이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실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 9조 (참여자 의무)

본 사업 활동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운영규정을 숙지함과 함께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의 의무사항을 지킨다.

1.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통장사본(본인명의), 증명사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 서류(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요청서류)를 제출한다.
2. 본 기관에서 추진하는 소양 및 직무, 보수교육을 이수한다.
3. 참여자는 정기모임(연 2회)과 평가회(연 1회)에 참여한다.

4.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과 단골고객 확보에 적극 참여한다.
5. 노일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본 사업에 참여한 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 할 수 없다.
6. 참여자는 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7. 참여자는 활동과 관련된 제반사항(활동사항 외)을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8. 참여자는 활동 중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개인이 책임진다.

제 10조 (참여자 자격 상실 및 해지)

참여자는 참여일로부터 당 해 년도의 12월 31일 후에는 참여자 자격이 자동 상실되며,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자 자격을 해지한다.

1. 참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상기 이용규칙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참여자의 사회통념과 상식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참여자 개인 과오에 의하여 사업을 저해하거나 피해를 초래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5. 참여자 간의 위화감 조성으로 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6. 대외적으로 기관 및 사업의 위상을 실추시킨 경우

제 11조 (근무조건)

1. 참여자는 다음과 같은 근무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인 월 4회 이상 기준, 24~30시간 근무

2. 늘봄카페(반포점,방배점,방배느티점)사업단 내에서 시즌에 알맞은 계절음료 및 빙과류를 추가 제조, 판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판매 수익금은 제 12조(활동비 지급기준)와 동일하게 지급한다.

제 12조 (활동비 지급기준)

1. 활동에 대한 산출기준일은 해당 매월 1일부터 말일로 한다.
2. 활동비는 근무 상황부 및 활동일지와 월 결산에 따른 임금지급 보수대장에 준하여 지급한다.
   1) 활동의 근거로 근무 상황부, 활동일지를 기록하며, 담당자의 확인을 받는다.
   2) 활동비는 익월 5일(공휴일인 경우 5일이 포함된 금요일) 참여자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3) 2022년 시간당 최저시급 9,160원 이상으로 준수하여 지급한다.

(단위 : 시간, 원)

구 분	근무시간	배치방법		근무내용	보 수		
					보조금	수익금	
시니어 바리스타 (참여자)	월 28	반포점	4인 1조 20명 (요일별 근무)	원두커피, 제빵 제작 및 판매/ 매장관리	147,200 (16시간×9,200원)	110,400 (12시간×9,200원)	월별 판매 수익금 5% 1/N
		방배점	4인 1조 20명 (요일별 근무)				
		방배느티점	4인 1조 20명 (요일별 근무)				

3. **활동으로 발생한 순 수익금은 5% 적립 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수익금의 5% 적립 후, 익월 첫주에 1/N하여 지급
   2) 지급액 및 지급 시기는 수익금 총액 대비 참여자 동의 후 변경 가능

제 13조 (전문인력 고용 및 운영)

1.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카페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1) 고용기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거한다.
      : 카페 자격증 소지자 및 바리스타 경력 3년 이상 자
      : 참여자 2/3 이상 동의 후 지자체 승인요청
   2) 전문인력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위 : 시간, 원)

구 분	근무시간	배치방법		근무내용	보 수
					수익금
전문인력	월120시간 (20일기준)	반포점	전문 바리스타 1명 (매일 6시간 근무)	전반적인 매장관리	1,444,400 (주휴시간포함 157시간×9,200원×1명)

   3) 운영상의 이유로 전문인력 근무시간 초과분은 참여자의 2/3이상 동의 후 추가 지급한다.
   4) 2022년 시간당 최저시급 9,160원 이상으로 준수하여 지급한다.

5) 급여는 매월 말일 참여자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제 14조 (사업활성화 기금)

1. 참여자는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활동에 대한 수익금 중 90%를 전문인력 인건비, 재료비 및 운영비 등으로 적립하여 사용한다.
2. 기금은 다음과 같은 항에 사용 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을 고용하여 인건비 지원
   2) 참여자 활동을 위한 식재료비 지원
   3) 참여자 활동관련 운영비(홍보비 등) 지원
   4) 시설물 유지보수비(시설비, 장비구입비) 지원
   5) 참여자 교육 및 행사 등
   6) 참여자가 2/3가 동의한 운영비 지원
3. 부득이하게 본 기관이 사업을 종결할 경우, 적립금(수익금)은 해당 적립(수익발생)연도의 참여자에게 배분하여야 함.

제 3 장 회의 및 교육

제 15조 (회의)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이 연 2회 정기모임 및 평가회를 갖는다.

1. 정기모임은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 및 지원 사항에 대한 내용 등을 논의한다.
2. 정기모임 일시와 장소는 참여자 활동여건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별도 공지한다.

제 16조 (교육)

1. 참여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매년 소양 및 직무, 안전교육(4시간 이상)을 실시한다.
2. 소양 및 직무교육은 본 기관에서 임의로 교육을 결정 할 수 있다.
3. 활동참여자 및 이용자 요청에 의해 추가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4. 활동참여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참여 한다.

부 칙

제 1조 효력발생일은 2022년 01월 01일로 한다.

제 2조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정기모임에서 부의하고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 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지침과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